

#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5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15.

발의자 : 윤재옥 · 김기웅 · 정성국  
박충권 · 서천호 · 이인선  
최보윤 · 진종오 · 백종현  
최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점검(이하 “안전점검등”이라 한다)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.

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 · 시공 · 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 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 · 시공 · 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

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  
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  
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3항 등).

##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해당 시설물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(「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

2.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. 다만,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해당 시설물을 설계·시공·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

2.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. 다만,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3항제1호의3 중 “제26조제3항을”을 “제26조제4항을”로 한다.

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

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

2의3.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

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안전점검등의 대행) ① ·  ②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6조(안전점검등의 대행) ① ·  ② (현행과 같음) 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  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  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  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  다.</p> <p>1. 해당 시설물을 설계 · 시공 · 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. 이  하 같다)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</p> <p>2.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 점검전문기관. 다만, 공공관리  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  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  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</p>

<p>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</p> <p>제40조(시설물의 성능평가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④</u> ·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40조(시설물의 성능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해당 시설물을 설계 · 시공 ·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</p> <p>2.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. 다만,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---	--

<p>③ ~ ⑦ (생 략)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</p>	<p>제65조(별 칙) ① · ② (생 략)</p>	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</p>	<p>제65조(별 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1. · 1의2. (생 략) 1의3. <u>제26조제3항을</u>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1의3. <u>제26조제4항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2. ~ 7. (생 략)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</p>	<p>제67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	<p>2. ~ 7.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</p>	<p>제6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1. ~ 6. (생 략)</p>	<p>② ----- ----- -----.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6의2. <u>제26조제3항을</u> 위반하여</p>
<p>&lt;신 설&gt;</p>			<p>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</p>

	<u>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</u> <u>행자로 선정된 자</u>
7. · 8. (생 략)	7. · 8.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2의2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</u> <u>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</u> <u>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2의3.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</u> <u>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</u> <u>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